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동현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5. 1. 24 01:34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미성년자인 D(여, 17세)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성분의 액상을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5. 6. 28.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연초 형태로 만든 대마초 끝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공범진술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관련)

1. 감정서 1부(A 모발), 각 감정서

1. A 통화내역 1부, A 데이터 기지국 위치 1부, E 데이터 기지국 위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미성년자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정의 근거: ① 2025. 1. 24. 미성년자에게 무상교부한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0,000원, ② 2024. 1. 24.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0,000원, ③ 2025. 6. 28. 대마초 1회 흡연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 D에게 액상대마를 교부하였고, 본인도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합성대마를 교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D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고, 본인도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E, F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본인에게 브랙(합성대마)이나 케타민을 자주 권하여 한동안 인연을 끊고 지냈다. 그러다가 2025. 1. 초순경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마약을 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여 본인 집에 오라고 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처음 2~3일 정도는 문제없이 지냈는데, 전자담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냐 묻자 '브랙'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2025. 1. 24. 본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D을 집에 불렀기에 왜 말도 없이 불렀냐고 다투었고, 그 후로 인연을 끊었다. 당시 피고인이 본인에게 'D과 약을 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 237쪽).

2)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5. 1. 24. 강아지 똥을 치워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F의 집에 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본인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주면서 한번 빨아보라고 하여 한 모금 빨고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거 브랙이야, 괜찮아'라고 말했다. 두 번 정도 더 빨았더니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쪽).

3) E은 수사기관에서 「2025. 1. 24. F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2년만에 만났다. 피고인이 'F는 집에서 자고 있고, 집에 여자가 있다'고 말하여, 누구인지 묻자 'D'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에게 D이 왜 집에 있는지 묻자 'D이 브랙을 하고 집에 누워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대전으로 함께 이동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다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 217쪽).

나. 위 F, D,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기록상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도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F, D,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2025. 1. 24. F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대전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E에 대한 데이터 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5. 1. 24. 오전 7시 무렵 피고인과 E은 F의 주거지가 아닌 대전 서구 G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D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너 F형 집에 갔더라?'라고 연락이 왔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내가 거기 갔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92쪽),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브액을 빨았더니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1쪽), 검사가 어떤 냄새가 났는지 묻자 '일반 전자담배에 비해 특별한 특징은 없었고,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브액은 달달한 냄새가 나고 액상대마는 역한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2쪽), F도 수사기관에서 '떨액(액상대마)은 거북한 풀냄새가 나고, 브액은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구별이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15쪽), E은 수사기관에서 '브액을 깊게 흡입하게 되면 사람이 몸이 굳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1쪽), 위 D의 진술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을 때를 묘사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F 방 책상 위에 왼쪽부터 노란색, 회색, 푸른색의 전자담배기기 3대가 놓여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빨아보라고 권한 기기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위 사진 가운데에 있는 배터리가 회색인 전자담배를 권했다. 오른쪽 푸른빛이 도는 기기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마개 같은 것이 빠지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 532쪽). 이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사진 속 전자담배기기 3대 중 오른쪽 푸른색¹⁾의 전자담배기기가 떨액 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기이다. 피고인이 제 떨액을 사용하였다면 그 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한 기기는 가운데 회색 전자담배기기라고 진술하였다'고 되묻자,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겠으나 회색 기기도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끼우면 마약 흡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4, 61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액상대마 흡입 시 사용한 기기는 오른쪽 푸른색 기기와 같은 모양의 기기인데 배터리(손잡이) 부분의 색이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가운데 회색 기기는 액상대마 전용인지 묻자 맞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43쪽), D의 진술과 일치한다.

4) F는 2025. 7. 10.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잘못되었다. 평소 피고인이 브액을 자주 흡입하여 2025. 1. 24.에도 브액을 흡입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억을 떠올려보니 피고인이 본인 집에 오고 3일 정도 후에 브액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같이 사러 가자'고 몇 번이나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 때 피고인이 브액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11쪽).

그러나 F는 같은 조사에서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첫 기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본인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므로, 피고인의 악의를 사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8쪽), F의 위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조사당시 검사는 사진 속 오른쪽 푸른색 전자담배기기 부분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오른쪽 푸른색 전자담배기기를 '노란색 원 안 기기'라고 지칭하였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25. 6. 29.경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전 F와는 마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F가 검거된 이유를 아는지 묻자) 대구에 사는 여자랑 관련된 마약 범죄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본인은 F와 마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F와 관련된 여자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8쪽), 검사가 2025. 1. 24. D을 만나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2025. 1. 24. F 집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D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증거기록 420쪽). 피고인은 2025. 6. 30.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제1회 조사와 동일하게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454쪽), 검사가 D이나 E의 진술, E 및 피고인의 기지국 위치 확인에 따른 E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계속 피고인을 추궁하자 변호인과 면담한 후 2025. 1. 24. 액상대마를 혼자 흡연한 사실이 있고,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59, 460쪽). 피고인은 2025. 7. 14. 제3회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액상대마를 혼자 흡연하였을 뿐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변호인과 면담한 후 'F의 집에 있던 액상대마를 D에게 교부하고 함께 흡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641쪽).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계속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가 번복하기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전반에 대하여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5. 6. 29.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미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초기화한 상태로 입국하였다(증거기록 404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귀국 이틀 전쯤 도박 관련된 내용이 경찰에 발각될



까 두려워 초기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7쪽), 수사관이 2025. 6. 29. 체포당일 오전에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추궁하자 '당황해서 헛말이 나왔다'면서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초기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18, 419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5. 6. 29. 07:3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28번 게이트에서 체포되었고, 2025. 6. 29. 13:51경 동대구역 7번 승강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의 아이폰16 프로맥스 휴대전화기는 2025. 6. 29. 08:27경 초기화되었는바, 체포된 이후 급하게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여 위 번복 진술 역시 거짓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2025. 1. 24. 새벽 E과 대전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F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E을 30분 정도 만나고 헤어졌다. 당시 E은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8쪽).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과 E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면 2025. 1. 24. 새벽에 대전 서구 G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추궁하자 'E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래 전 일이라 잘못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에 간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E이 그냥 가자고 하여 따라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59쪽). 이후 변호인과 면담한 후 'E이 대전에 필로폰을 구입하러 간다기에 그냥 따라갔다 왔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60쪽). 피고인의 최초 변명은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보기에 매우 구체적인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연루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라.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카락²⁾의 6cm이상 구간



에서 합성대마 성분(MDMB-4en-PINACA)이 검출되었으나, 위 성분에 대한 대사체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625, 626쪽), D 모발에 대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D의 머리카락에서 합성대마 성분(MDMB-4en-PINACA)에 대하여 음성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628쪽).

그러나 ① 모발 감정 결과에서 합성대마 대사체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합성대마의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모발에서 대사체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고³⁾, 모발의 경우 피고인의 활동에 따른 외부오염 가능성도 있어 모발 감정 결과 대사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성대마 사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하던 F와 함께 생활을 하여 F가 피운 합성대마로 인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합성대마 성분이 흡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F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F와 함께 생활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F가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합성대마 성분이 흡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D, E, F가 '피고인이 D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고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감정물(피고인의 머리카락) 약 100올의 길이는 약 8cm ~ 15cm이다.

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① 대사체는 마약류보다 모발에 축적되는 양이 적으며, ② 특히 MDMB-4en-PINACA 대사체처럼 산성물질인 경우 모발에 축적되는 양이 더 적고, 합성대마 복용자의 모발시료를 분석한 결과 위 MDMB-4en-PINACA 성분은 45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지만, 대사체 성분은 단 2개 시료에서만 검출되었다고 보고된 연구 사례도 있는 등, 마약류를 복용하였더라도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만 검출되고 대사체 성분은 농도가 낮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미성년자인 D은 피고인으로 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기 전부터 이미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교부한 것은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수수, 투약한 합성대마,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고 함께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한근 _____

 판사 김주형 _____

 판사 윤규원 _____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소창범(기소), 강백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합54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기 전부터 이미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교부한 것은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합성대마 및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체로 위와 같은 정상과 대동소이하고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



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 또한 없다. 결국,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호신 _____

 판사 김서현 _____

 판사 박민선 _____